

2026년 목적지정형 공익광고(콘텐츠) 사업 FAQ

① 사업 내용 전반 관련

- Q1. 목적지정형 공익광고(콘텐츠)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A. 지역·중소매체가 국가 중점 홍보 과제와 공익광고 고유 목적에 관한 공익적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익광고(콘텐츠)로 제작·집행할 수 있도록 광고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Q2. 어떤 주제로 공익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나요?
 - A. 국가 중점 홍보 과제(자살 예방, 청년 지원 정책, 건강한 온라인 문화, 저출생 정책)와 공익광고 고유 목적(지역 공익성 및 생활 개선, 지역 발전, 지역 문화 다양성, 정보 보편성) 중 하나 이상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3. 어떤 형태의 공익광고(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나요?
 - A. 기획기사, 숏폼영상, 카드뉴스, 공익 캠페인 등 주제와 매체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당 매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매체로 신청한 경우에는(즉, 방송매체인 경우에는)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당 방송매체에 집행해야 합니다. 단,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 동일 법인(또는 사업자)이 운영하는 다른 매체에 추가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제작·집행한 공익광고(콘텐츠)가 신청한 매체 유형에 해당하는 공익광고(콘텐츠)의 제작·집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Q4. 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A. 신청서 및 기획서 제출, 심사 및 선정, 공익광고(콘텐츠) 제작·집행, 검수, 광고료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작·집행 최종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며, 제작·집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수를 거쳐 익월에 광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자격 관련

- Q1. 접수 마감일 당일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가 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접수 마감일인 2026년 8월 7일 16시까지 자율심의 참여 서약이 완료되고 서약사 자격이 유효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 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편집위원회 설치·운영 또는 편집규약 제정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Q3.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이지만 편집위원회나 편집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쇄매체 및 인터넷매체는 자율심의 참여 서약사 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요건과 편집위원회 설치·운영 또는 편집규약 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Q4. 일반주간신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A. 일반주간신문 중 정기간행물 등록사항에 보급지역이 '지역'으로 등록된 매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5. 전국 단위 일간지나 방송사 등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지역·인터넷매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공익광고 집행 대상이 아닌 전국 단위 일간지, 중앙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및 뉴스통신사 등이 운영하는 매체와 그 계열 매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6. 동일한 법인(또는 사업자)이 여러 매체를 보유한 경우 각 매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동일 법인(또는 사업자)이 여러 매체를 운영하는 경우 매체별로 1건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은 매체별로 판단하므로 각 매체가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기획서와 관련 증빙

서류도 매체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체별 기획서는 서로 달라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획서를 중복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복수의 매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각 매체가 제출한 기획서에 따라 공익광고(콘텐츠)를 각각 제작·집행해야 합니다.

③ 공모 및 심사 관련

- Q1. 신청서의 접수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 A. 신청서가 접수 이메일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감 시간보다 충분히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2.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재단에서 모두 보완을 요청하나요?
 - A. 재단은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서류의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Q3. 편집·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실은 반드시 회의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 A. 반드시 회의록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운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및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Q4. 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건가요?
 - A. 일정 기간 내에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서 도착 여부를 재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Q5. 매체 구분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 매체가 함께 심사를 받나요?
 - A. 아닙니다. 인쇄매체, 인터넷매체, 방송매체별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 Q6. 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평가하나요?
 - A. △공익성 및 메시지 적절성(30점), △기획 내용의 충실성(30점), △기대 효과 및 확산 가능성(20점), △실행 가능성 및 구체성(20점)이 심사기준이며 총점은 100점입니다.

- Q7. 최종 선정 매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A. 심사위원 7인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5인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Q8. 제안한 콘텐츠의 수량과 규모도 심사에 반영되나요?
 - A. 네. 매체별 광고료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유형, 분량, 제작 수량 및 집행 횟수 등 산출물의 규모와 구성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 Q9. 선정된 매체가 선정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선정 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차순위 매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Q10. 고용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A. 접수 마감일 현재 대표자의 연령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원이 없는 만 60세 미만 개인사업자>

- 1) 신청서 제출 이메일 본문에 **‘본 매체사는 고용직원이 없으며, 대표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만 60세 미만입니다’**라고 작성
- 2) 증빙서류: ①국민연금 완납증명서 ②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제출

<고용직원이 없는 만 60세 이상 개인사업자>

- 1) 신청서 제출 이메일 본문에 **‘본 매체사는 고용직원이 없으며, 대표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만 60세 이상입니다’**라고 작성
- 2) 증빙서류: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제출

④ 신청서 작성 관련

- Q1. 기획기사 3건을 제작하는 경우 ‘총 산출물 수’는 1건인가요, 3건인가요?
 - A. 실제 제작하는 산출물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3건입니다. 기획서 개요표는 동일한 공익광고(콘텐츠) 유형이므로 하나만 작성하되, ‘분량 및 횟수’에 기획기사 3건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Q2. 예를 들어, 기획기사 2건과 숏폼영상 3편을 제작하는 경우 개요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A. 공익광고(콘텐츠) 유형이 다르므로 기획기사와 숏폼영상을 구분하여 개요표를 2개 작성해야 합니다.
- Q3. 같은 유형의 공익광고(콘텐츠)를 여러 건 제작하는 경우 개요표도 제작 건수만큼 작성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동일한 공익광고(콘텐츠) 유형은 하나의 개요표로 작성하고, '분량 및 횟수'에 전체 제작 건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 Q4. 하나의 공익광고(콘텐츠)에 여러 신청 주제를 함께 담아도 되나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한 각 주제와 공익광고(콘텐츠) 내용의 연관성이 기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Q5. 별도의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공익광고(콘텐츠)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매체별로 정해진 광고료를 고려하여 공익광고(콘텐츠) 유형, 분량, 제작 수량 및 집행 횟수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광고료 규모에 비해 산출물이 지나치게 적거나, 실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제시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Q6. 신청서와 기획서 개요표의 산출물 수가 달라도 되나요?
 - A. 일치해야 합니다. 선정 후 기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작·집행 여부를 검수하므로 신청서와 기획서 개요표의 공익광고(콘텐츠) 유형 및 산출물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 Q7. 기획서의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 A. 네. 각 항목의 글자 수는 공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 제작 및 집행 관련

- Q1. 공익광고(콘텐츠)는 신청한 매체 유형에 맞게 제작하여 해당 매체에 집행해야 하나요?
 - A. 네. 신청한 매체 유형에 맞는 공익광고(콘텐츠)를 제작하여 신청한 매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매체로 신청하였다면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해당 방송매체에 집행해야 합니다. 단, 다른 유형의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 동일 법인(또는 사업자)이 운영하는 다른 매체에 추가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 제작·집행한 공익광고(콘텐츠)가 신청한 매체 유형에 해당하는 공익광고(콘텐츠)의 제작·집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Q2. 선정 후 공익광고(콘텐츠)의 주제나 제작 수량을 변경할 수 있나요?
 - A. 주제, 공익광고(콘텐츠) 유형, 주요 내용, 제작 수량 또는 신청한 매체에서의 집행 방법·횟수 등 기획서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Q3. 제작·집행 일정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제작·집행 일정 변경은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공익광고(콘텐츠)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작·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Q4. 협찬고지는 여러 산출물 중 한 곳에만 표시해도 되나요?
 - A. 안 됩니다. 기획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집행하는 모든 산출물에 각각 고지해야 합니다.
- Q5. 생성형 인공지능을 일부만 활용한 경우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 A. 네. 최종 산출물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를 생성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Q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은 어떤 문구로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 A.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구로 작성여, 공익광고(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Q7.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콘텐츠와 주제만 같아도 중복지원에 해당하나요?
 - A. 주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의 주요 내용이나 실제 콘텐츠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 Q8. 공익광고(콘텐츠) 제작은 완료했지만 11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 A.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30일까지 공익광고(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⑥ 광고료 지급 관련

- Q1. 실제 제작비가 정해진 광고료보다 많이 든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고료는 매체 구분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Q2. 실제 제작비가 정해진 광고료보다 적게 든 경우 광고료가 감액되나요?
 - A. 아닙니다. 본 사업의 광고료는 실제 제작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획서에 따른 공익광고(콘텐츠) 제작·집행 및 검수 완료를 전제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Q3. 기획서에 제시한 산출물 중 일부만 제작·집행한 경우 광고료를 일부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기획서에 제시한 콘텐츠의 유형, 수량 및 집행계획을 모두 이행해야 광고료가 지급됩니다. 일부만 제작·집행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며 광고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Q4. 공익광고(콘텐츠)에 협찬고지를 누락한 경우에도 광고료를 받을 수 있나요?
 - A. 협찬고지가 누락된 공익광고(콘텐츠)는 정상적으로 제작·집행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단의 안내에 따라 보완 또는 재집행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료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5. 2026년 11월 30일 전에 공익광고(콘텐츠) 제작·집행을 완료하면 광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네. 2026년 11월 30일은 콘텐츠 제작·집행의 최종 기한입니다. 그 전에 기획서에 따른 콘텐츠 제작·집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검수 절차를 거쳐 익월에 광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